

의안번호	2204659
의 퇴 인	김소희의원
회 답 일	2024.12.17.
추계번호	24D430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근로감독관 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를 포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06만원, 2029년 115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52만원(연평균 11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범위의 확대(안 제5조)	106	108	110	113	115	552	110

주: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범위의 확대(안 제5조)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현행법에서는 순직 근로감독관에게 순직유족연금액을 지급하나,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으로 승인받으면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액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3. 본 추계는 2025년에 근로감독관 1명이 순직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 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 제6조의2 ¹⁾ 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 서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 가 입은 재해를 포함하도록 규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0	-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 이하 생략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 본 추계에서는 2025년에 근로감독관 1명이 순직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가정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발생 확률은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0.004%²⁾로 추정되고 이를 추계기간 동안의 근로감독관 수에 적용하면 5년에 1명씩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수는 2023년 기준 2,975명이고 최근 5년(2019~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4.9%
 -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 수를 산출한 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발생 확률 0.004%를 적용하면 5년 합계 1명으로 추정

[표 2] 근로감독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수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근로감독관 수(a)	3,274	3,434	3,602	3,779	3,964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수(=a×0.004%)	0.13	0.14	0.14	0.15	0.16	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³⁾

2)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승인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수는 2019년 6명, 2020년 14명, 2021년 9명, 2022년 8명, 2023년 2명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중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연도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수를 경찰 및 소방공무원 수로 나누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발생 확률을 산출하면 연평균 0.004%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순직 근로감독관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 회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으로 승인받아 현행보다 증가한 유족연금액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순직유족연금: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
- 본 추계에서는 2025년에 대상자 1명이 발생하고 증가한 유족연금액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현행법에서는 순직 근로감독관에게 순직유족연금액을 지급하나,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으로 승인받으면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액이 증가하 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 기준 순직유족연금의 평균액은 연간 28,547,000원이고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평균액은 29,588,000원
 - 2025년에 각 유족연금의 평균액은 최근 3년(2022~2024년) 공무원보수상 승률 1.9%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증가한 유족연금액은 1,061,000원(=위험직무순직 30,150,000원 - 순직 29,089,000원)
 - 개정안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대상자 1명에게 첫 연금 지급 시 증가한 유족연금액 1,061,000원을 지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금액 인상 방식(전 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대상자의 연금액 인상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표 3] 증가한 유족연금액 추정: 2025~2029년

(단위: 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증가한 유족연금액	1,061,000	1,083,000	1,105,000	1,127,000	1,150,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2025년에 대상자 1명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06만원, 2029년 115만원으로 향후 5년간 552만원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명, 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누적 대상자 수(a)	1	1	1	1	1	—
증가한 유족연금액(b)	106	108	110	113	115	—
추가재정소요(=a×b)	106	108	110	113	115	5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5년에 대상자 1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